

●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101)

2025. 9.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3101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 8. 11.

다. 회 부 일 : 2025. 8. 14.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식생활 교육 정책 개발과 사업 확산을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식생활 교육 전문 기관으로

나. '20년 1월 공모를 통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23년 1월 재계약으로 운영하여 '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또는 설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①항2호(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민의 가구 및 인구유형 변화(1인가구 및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식생활 다변화로, 식생활 관련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단시간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식생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 서울시민의 다양한 식생활·식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내 영양·식생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영양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위탁을 통해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활성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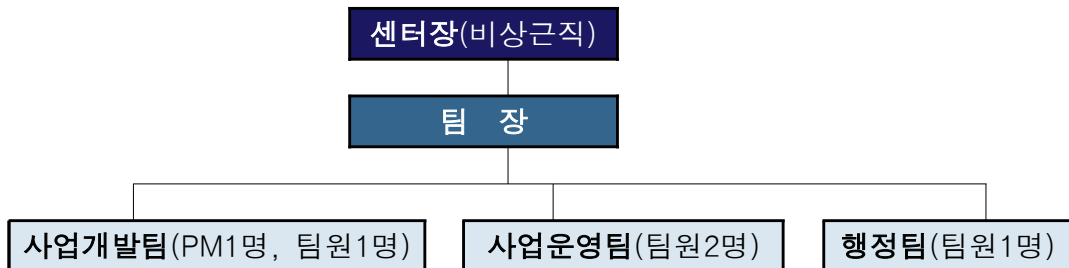
다. 위탁사무 내용

-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및 취약분야 사업 개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 자치구 식생활 개선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 교육사업 수행
- 서울시민 맞춤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환경친화적 식생활 교육 정책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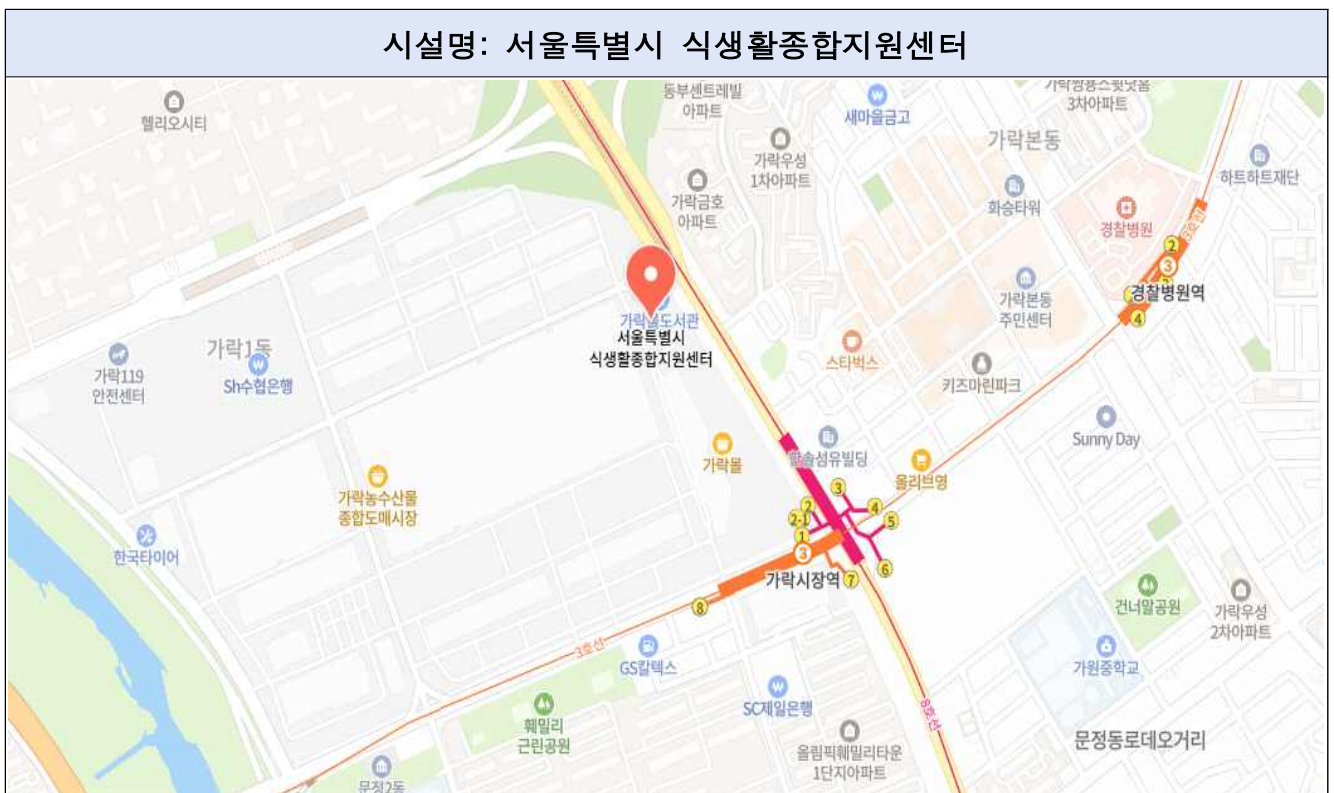
라.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3년)

마.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 조직도 및 정·현원 : 정·현원 7명(센터장, 팀장 1명, 팀원 5명)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시설규모 : 사무공간 총 125.09 m^2
 - 가락물 업무동 13층 15호 41.22 m^2 , 16호 83.87 m^2
- 주요시설 : 개인상담실, 사무실, 회의실 등
- 위치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자격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선정

사. 소요예산 : 710백만원

- 민간위탁금 : 710백만원(국비 50% 145, 시비 50% 145, 자체시비 420)
※ '26년 국비 보조금액 등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353,487천원, 운영비 52,290천원, 사업비 등 300,223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
 4.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다른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7.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5.6.25.: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재위탁)
- 2025.7.11.: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실시(85.26점)
- 2025.7.1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5. 제5차)

○ 향후계획

- 2025.9.: 시의회 동의
- 2025.10.~12.: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이은형 (☎ 2133-4739)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동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제4차 위탁 (재계약)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3년) 만료 시기가 '25년 12월 말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
※ 4차 협약 (재계약): '23. 1. 1. ~ '25. 12. 31. (3년)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 이번 '25. 8월 경 제332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재위탁) 및 제4조의3제1항(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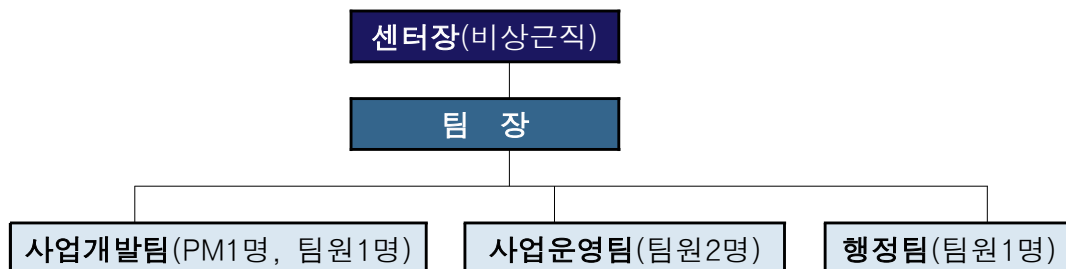
2 민간위탁 개요

○ 기존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1년 ('16.1.1.~'16.12.31.)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익계약
2차 위탁	3년 ('17.1.1.~'19.12.31.)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공개모집	재위탁
3차 위탁	3년 ('20.1.1.~'22.12.31.)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공개모집	신규위탁 (시설형 변경)
4차 위탁	3년 ('23.1.1.~'25.12.31.)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재계약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 구 분 : 재위탁 (공모)
- 위탁기간 (예정) : 3년 ('26.1.1. ~ '28.12.31.)
- 근무인원 : 7명 (센터장(1), 팀장(1), 직원(5))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시설규모 : 사무공간 총 125.09 m^2
(가락물 업무동 13층 15호 41.22 m^2 , 16호 83.87 m^2)



- 소요예산 ('25년 기준) : 704,790천원

연 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5년	식생활교육운영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 704,790 천원 - 민간위탁금 (국·시비 5:5 매칭) = 290,000천원 ▶ 인건비 = 52,200천원 ▶ 사업비 = 237,800천원 - 민간위탁금 (시비) = 353,830천원 ▶ 인건비 = 273,150천원 ▶ 운영비 = 59,280천원 ▶ 사업비 = 21,400천원 - 사무관리비 (시비) = 60,960천원 ▶ 임차료 (3,500,000원*12월) = 42,000천원 ▶ 관리비 (1,580,000원*12월) = 18,960천원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공모 예정	3년 이내 (’26.1.1.~’28.12.31.)	적정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85.26점**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 ‘서울특별시장’이 재위탁 (공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체적인 위탁사무

-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및 취약분야 **사업 개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 자치구 식생활 개선 **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 **교육**사업 수행
- 서울시민 맞춤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환경친화적 식생활 교육** 정책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동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사무는 ‘식생활 관련’ ‘정책 개발’, ‘교육’ 및 ‘홍보’이며, 특히 동 센터는 「식생활교육법」 제25조의2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역할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는 바, 동법 제25조의2제2항 따른 ‘기준’을 갖춘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식생활, 식품, 건강, 영양’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이에 더해, 최근 ‘개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간편식, 외식, 가공식품’ 중심의 식생활 변화 등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전문적인 식생활·식습관 교육 등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서울특별시 식생활 종합 지원센터’의 사무는 비록 그 센터 명칭이 ‘식생활 종합 지원센터’이지만, 그 실질은 「식생활교육법」 제25조의2에 따른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무와 사실상 유사하다고 사료되며,
- 유관 상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동 사무 관련 지침인 ‘2025년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시행계획(안)(p.5)’에서 ‘식생활 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와 병기 하여 표시하고 있음.

※ 지자체를 제외한 식생활교육을 수행하는 지자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또는 식생활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보조사업자 등을 사업 수행기관이라 칭함.

* 사업수행기관 중 지자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또는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수탁기관 이외는 사업비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따라서, 형식적인 센터 명칭에 따른 판단이 아닌, 센터의 실제 역할과 사무 및 관련 상위 부처의 동 센터에 대한 실질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식생활교육지원센터)으로 볼 여지도 존재하다고 사료됨.

- (실질명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 (근거 조례상 명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다만, 대법원 2010다 81254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 해석에 있어서 원칙이 되는 해석 방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뜻하는 ‘문리적 해석’인 바 향후 동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동 센터의 위탁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의 ‘센터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이러한 ‘실질적 센터 명칭’과 ‘근거 조례상 센터 명칭’의 불일치를 ‘문리적 해석’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을 그 위탁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 ‘개별법에 위임 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관련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를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개별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아닌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¹⁾를 그 근거로 삼을 수는 있다고 사료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현행 6조)은 법문상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명백하고 같은 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의 대상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위임, 재위임에 관한 위 규정마저 권한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4. 개별조례 및 일반조례

○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의 예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 일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개별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을 때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을 위임의 직접적 근거로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때, 일반조례 역시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⁴⁾

1)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 다만, 그럼에도 동 대법원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해, ‘위임 관련’ ‘일반법’에 ‘포괄적인 위임 권한’을 부여하여 사실상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형해화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 센터의 명칭’과 ‘근거 조례상의 명칭’을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에 더해, 관련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비 지원’은 동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만이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그 수탁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약 1억4천5백만원 (25년 기준)을 동 센터 ‘민간위탁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서울시 지정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식생활교육 서울네트워크, (사)푸드포체인지, 내일의식탁,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한 살림서울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식생태문화협회 (6곳)
- (농림축산부 지정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1곳)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내용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당해년도)	290,000천원	(국비)(45,000천원)	(시비)(45,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국비)	(기타)

- 따라서, 향후 동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그 민간위탁금 예산에 ‘국비’를 활용할 예정이라면, 그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의 본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 지정’ 후 ‘보조금 지원’ 사무로의 전환도 아울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민간위탁 방식’ 관련 사항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임.

4 종합의견

- 동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사무는 ‘식생활 관련’ ‘정책 개발’, ‘교육’ 및 ‘홍보’이며, 특히 동 센터는 「식생활교육법」 제25조의2상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역할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는 바, ‘식생활, 식품, 건강, 영양’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
- 아울러, 형식적인 센터 명칭에 따른 판단이 아닌, 센터의 실제 역할과 사무 및 관련 상위 부처의 동 센터에 대한 실질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고 사료됨.

- 이에 더해, 대법원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그 위탁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그럼에도 향후 동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동 센터의 실질적 위탁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의 ‘센터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실질명칭) ‘서울특별시 식생활 **종합** 지원센터’
 - (근거 조례상 명칭) ‘서울특별시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 나아가, 그동안 동 센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는 ‘국비’를 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 향후 동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그 민간위탁금 예산에 ‘국비’를 활용할 예정이라면, 그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지정”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의 본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 지정’ 후 ‘보조금 지원’ 사무로의 전환도 아울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민간위탁 방식’ 관련 사항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신현태	02-2180-8145